

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1. 개정이유

농업기계화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기계화 실태조사 실시 및 농업기계 수입, 생산, 판매관련 자료 제출 요구 근거 마련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(법률 제18259호, 2021. 6. 15.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,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기간 설정(안 제4조제3항 신설)

-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 없이 일률적으로 3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, 신기술 정도에 따라 지정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,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

나. 법 개정으로 신설된 업무 등의 권한 위임 규정 마련(안 제9조 개정)

- 농업기계화 실태조사, 신기술농업기계 지정 취소, 농업기계의 자료 요구 권한 중 일부(미검정 농기계 유통점검 및 사후검정 관련), 미검정 농업기계의 판매·유통 점검업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

다. 과태료 부과 시 위반차수 적용 규정 마련(안 [별표] 1. 일반기준 개정)

-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(권익위)에 따라 과태료 부과시 가중 처분의 적용일 및 적용차수 기준을 명확화

라. 신설된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(안 [별표] 2. 개별기준 개정)

- ①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*와, ②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**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

* (1차) 500만원, (2차) 750만원, (3차) 1,000만원

** (1차) 200만원, (2차) 300만원, (3차) 500만원

마. 어려운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변경(안 제4조 개정)

- ‘도입기술의 소화개량(消化改良)’을 ‘도입된 기술의 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’로 변경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 타 : 별첨, 신·구조문대비표

[별첨]

대통령령 제 호

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(消化改良)으로”를 “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과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”로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9조제1항 중 “법 제15조제1항”을 “법 제16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며,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, 제2호, 제7호 및 제1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8호(종전의 제6호) 중 “법 제14조”를 “법 제15조”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(종전의 제7

호) 중 “법 제18조제3항”을 “법 제19조제4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15조제1항”을 “법 제1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1.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
2.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판매·유통 점검
7.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요구 중 일부(제2호와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)
- 1의4. 법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

제10조 중 “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”을 “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”으로 한다.

별표 제1호가목 전단 중 “부과기준”을 “가중된 부과기준”으로 하고, 같은 목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별표 제1호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호 라목(중전의 다목) 중 “제2호바목”을 “제2호자목”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
같은 표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부터 같은 호 다목의 근거 법조문란까지 중 “법 제18조제1항”을 각각 “법 제19조제1항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라목 중 “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용”을 “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”로 한다.

제2호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18조제1항”을 “법 제19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를 각각 바목, 아목 및 자목으로 하며, 같은 호 바목(중전의 마목) 중 “법 제9조의2제2항”을 “법 제9조의2제4항”으로, “농업용”을 “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바목(중전의 마목)의 근거 법조문란 “법 제18조제1항 제4호”를 “법 제19조제1항 제5호”로 하며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19조제1항 제4호	500	750	1,000
---	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--

별표 제2호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18조제2항”을 “법 제19조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사.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	법 제19조제2항	200	300	500
---	-----------	-----	-----	-----

별표 제2호아목(중전의 바목)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법 제18조제2항”을 “법 제19조제3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전에
신기술 농업기계로 지정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산정한다.

제3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
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·고시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<u>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(消化改良)으로</u>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된 농업기계 중에서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한다.	제4조(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·고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----- ----- -----.
② (생략) <u><신설></u>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	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농업기계를 지정하는 경우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정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.
제9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	제9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

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.

<신 설>

1. (생 략)

1의2.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2. (생 략)

3. ~ 5. (생 략)

<신 설>

6. 법 제14조에 따른 청문

7.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

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업무를 「농촌진흥법」 제33조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위탁한다.

①----- 법 제16조제1항-----
-----.

1.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화에 대한 실태조사

1의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
1의3. (현행 제1의2호와 같음)

1의4. 법 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

2.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판매·유통 점검

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4. ~ 6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

7.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요구 중 일부(제2호와 제3호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)

8. 법 제15조-----

9. 법 제19조제4항-----

② ----- 법 제16조제1항-----

-----.

제1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.

[별표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
<신 설>

나. (생 략)

1) ~ 4) (생 략)

다. 제2호바목의 경우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.

2. 개별기준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<u>법 제9조제1항</u> 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	<u>법 제18조제1항 제1호</u>	500	750	1,000
나. <u>법 제9조제1항</u> 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	<u>법 제18조제1항 제1의2호</u>	500	750	1,000
다. <u>법 제9조제2항</u> 을 위	<u>법 제18조</u>	500	750	1,000

제10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-----
-----.

[별표] 과태료의 부과기준(제10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-----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-----

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다만,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 상에서 제외한다.

다. (현행 나목과 같음)

1) ~ 4) (현행과 같음)

라. 제2호자목-----
-----.

2. 개별기준

(단위 : 만원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<u>법 제9조제1항</u> 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	<u>법 제19조제1항 제1호</u>	500	750	1,000
나. <u>법 제9조제1항</u> 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경우	<u>법 제19조제1항 제1의2호</u>	500	750	1,000
다. <u>법 제9조제2항</u> 을 위	<u>법 제19조</u>	500	750	1,000

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·유통한 경우	제1항 제2호			
라. 법 제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	법 제18조 제1항 제3호	500	750	1,000
<신 설>				
만.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를 한 경우	법 제18조 제1항 제4호	500	750	1,000
<신 설>				
바.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8조 제2항 제1호	25	50	100
사.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1) 시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시정 2) 시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시정 3) 시정기한 경과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시정하거나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8조 제2항 제2호	25	50	100
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·유통한 경우	제1항 제2호			
라. 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	법 제19조 제1항 제3호	500	750	1,000
마.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19조 제1항 제4호	500	750	1,000
바.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한 경우	법 제19조 제1항 제5호	500	750	1,000
사. 법 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 한 경우	법 제19조 제2항	200	300	500
아. 법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법 제19조 제3항 제1호	25	50	100
자. 법 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한을 지키지 않거나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1) 시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시정 2) 시정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시정 3) 시정기한 경과 후 3개월을 초과하여 시정하거나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19조 제3항 제2호	25	50	100